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13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 출 일 : 2023년 8월 14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 기한이 종료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 13조)
-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수정(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안 제9조제4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해당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6. 15. ~ 7.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기 위한 조문 정비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2023.12.31.)로 끝남에 따라 그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의 2023년 8월 14일 제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현 행	개 정 안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⑩ (생략)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한 차례만 ----- -----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3조(특별회계 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

나. 검토 내용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안 제9조제4항)”

- 법제처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법령을 한글화하는 한편,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고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현행 조례 제9조제4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말의 올바른 쓰임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생각됨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안 제13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인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¹⁾(’23.5.26)를 통과한 후 입법예고²⁾(’23.6.15~7.5.)를 실시하는 등

1) 2023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통보(재정담당관-6214(2023.5.26.))

2)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서울시공고 제2023-1705호)

법률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일반회계가 지방세 수입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시 재정운영의 기본회계인 반면,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이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되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서울시장의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였음
- 현행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3년 예산규모는 1,696억 85백만 원이고 주요 세입원은 국가균형발전과 연계된 보조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며 주요 세출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특별회계 세출사업 목록(붙임1 참조)을 보면 대부분은 생활SOC 확충과 국비 매칭사업에 활용되고 있어 당초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³⁾에 따라 강남·북 지역격차 해소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 실효성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

〈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정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⁴⁾	113,883	231,219	193,275	162,616	169,685
증 감	-	117,336	△37,944	△30,659	7,069
증 감 륜	-	103.0% ⁵⁾	△16.4%	△15.9%	4.3%

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의안번호 202)'
제안이유 : 강남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균형발전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함

4) 2019~2022년: 결산서 예산액 기준, 2023년: 예산서 예산액 기준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과밀부담금의 50%,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자원부족분 지원(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재원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됨

-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소규모 생활서비스 시설확충도 필요하다 하겠으나,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자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제시하는 5개 분야, 88개 과제 중 12개 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의 22.5%, 붙임2 참조)만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성되었고,
- 현행 조례 제10조6)에 규정된 전담조직이라 볼 수 있는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단 1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에 앞서 균형발전 합목적성 달성을 위해 특별회계가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아울러,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에서 운용하고 개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부서의 세출예산으로 별도 편성·집행되고 있는 바, 균형발전본부가 특별회계 사업을 감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시 의회의 예·결산 심의도 각 사업의 소관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므로, 특별회계 관리·운용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됨
- 따라서,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특별회계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도모하는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6)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0조(전담조직)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2023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현황 〉

(단위 : 백만원)

'23년 세입		'23년 세출	
계	169,686	계	169,686
자체수입 - 일반 부담금 등	25,714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3,684
		키움센터 설치	7,182
		로봇과학관 건립	18,904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1,866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 일반회계전입금 등	132,811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25,461
		문화예술시설 건립	50,513
		도서관 건립지원	24,759
의존수입 - 균특보조금 등	11,160	청소년시설 건립지원	5,982
		체육시설 건립지원	8,943
		예비비 등	2,392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어 투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순화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표현을 정비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생각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존속기한의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특별회계 운용과 합목적성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논의를 토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붙임1 2023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사업 현황자료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1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417
2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강서구 공항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300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동작구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716
4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지원	291
5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강동구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3,000
6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서대문구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지원	300
7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중랑구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지원	1,178
8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영등포구 대림3유수지 체육시설 건립지원	223
9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영등포구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지원	2,548
10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강북구 제4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387
11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비비	1,187
1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19,803
13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생활SOC복합화)	3,881
1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900
15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4,395
1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203
17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5,082
18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3,420
19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국고보조금 반환	1,330
20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4,536
21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26,900
22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강동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866
23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방이2동 주민센터 일대 복합개발 지원(전환사업)	104
24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개봉동 KBS송신소 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지원(전환사업)	300
25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강서구문화체육전기복합에너지충전타운도서관건립 지원(전환사업)	2,500
26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1,126
27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브라이트여의도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3,897
28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월계도서관 리모델링 지원(전환사업)	1,000
29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532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30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8,158
31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전환사업)	98
32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상일동도서관생활soc복합화 사업지원(전환사업)	2,572
33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성북 아동청소년 전용도서관 건립 지원(전환사업)	1,771
34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응암정보도서관 건립 생활SOC복합화 사업(전환사업)	1,281
35	서울도서관 지식문화과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생활soc 복합화 사업지원(전환사업)	1,420
36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건립	17,013 (10,952)
37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8,582
38	문화본부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60
39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응암정보도서관건립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180
4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대문구북가좌2동복합청사건립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300
41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대문구신촌동주민센터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300
42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금천구가족센터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119
4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구로구 고척1동청사 생활SOC복합화(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410
44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초구구룡공영주차장생활SOC복합화(생활문화센터 조성)(전환사업)	300
45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신길12구역사회복지복합시설건립(생활문화센터조성)(전환사업)	270
46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장원중 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조성)(전환사업)	
47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연극창작 지원시설 건립	20,817
48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관악문화복지타운건립(생활문화센터조성)(전환사업)	300
49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광진 문화예술 리모델링 지원(전환사업)	3,000
50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계속)	500
51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장위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500
52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도봉 문화예술 건립 지원(전환사업)	598
53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11,426
54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한류·공연관광 콤플렉스 조성 지원	656
55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운영	24,524
56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길음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900
57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중랑구혜원여고주차장및생활SOC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조성)(전환사업)	300
58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지방채증권이자상환	68

출처: 서울재정보털 사업별 예산정보(2023)

(단위 : 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명		'23년 예산액 (169,685)
합 계		38,147
1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19,803
2	서서울미술관건립	10,952
3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98
4	영등포구 대림3유수지 체육시설 건립지원	223
5	서초구 반포종합운동장 복합체육시설 건립지원	291
6	중랑구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지원	1,178
7	강동구 제2구민 체육센터 건립 지원	3,000
8	서대문구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지원	300
9	강북구 제4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387
10	동작구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716
11	강서구 공항동 생활SOC복합화사업 체육센터 건립 지원	300
12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900

출처: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개정안으로 비용 수반이 없음

4. 작성자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계획팀 이경남(2133-8628)